

법학도서관 그룹스터디실, 공동연구실 및 전자정보실 운영 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법학도서관에 설치된 그룹스터디실, 공동연구실 및 전자정보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 (이용자)

각 실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

1. 그룹스터디실

- ① 법학전문대학원생, 국제법무대학원생, 학부 학생
- ② 장애인
- ③ 타 단과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
-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

2. 공동연구실

- ① 법과대학 및 대학원 전임교원
- ② 법학전공 대학원생
-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

3. 전자정보실

- ① 경희대학교 구성원 전체
- 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

제3조 (이용방법)

다음 각 실의 이용신청 및 좌석배정은 다음과 같다.

1. 그룹스터디실

- ① 이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부터 사용당일까지 법학도서관 홈페이지 시설예약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이용 목적과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신청한다.
- ② 이용자는 이용목적과 인원 등 내용에 관하여 법학도서관 관장의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이용한다.
- ③ 시설의 사용 신청시 최소 사용 인원은 그룹스터디실(소)는 4인 이상, 그룹스터디실(대)는 8인 이상이어야 한다.

※ 최소사용인원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신청 시 시설사용을 불허 또는 취소하며 차기 이용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- ④ 사용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. 단, 연속사용자가 없을시 최초 사용시간후 재신청하며, 시간연장은 1회에 한한다.

2. 공동연구실

- ① 이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에 별첨 사용신청 양식에 이용목적 및 일시,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신청한다.

- ② 이용자는 이용목적과 인원 등 내용에 관하여 법학도서관 관장의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이용한다.
- ③ 시설의 사용 신청 시 최대 사용 인원은 4인 이하이어야 한다.

3. 전자정보실

- ① 이용자는 좌석을 선택한 다음 로그인하여 이용한다.
- ② 사용시간은 1인 기준 1일 2시간으로 제한한다.

제4조 (유의사항)

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실별 공통 유의사항

- 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, 청결과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 종료 시 대여한 사용기기를 반납해야 한다.

- ③ 기기가 훼손 또는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 - ④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해야 한다.
 - ⑤ 모든 시설은 법학도서관의 개관시간 중에만 사용이 가능함.
 - ⑥ 단체 또는 그룹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을 마친 후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법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2. 그룹스터디실
- ① 학술,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 목적으로 대학도서관내에서 진행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.
 - ② 지정된 일시를 준수해야 하며, 부득이하게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법학도서관과 협의해야 한다.
3. 공동연구실
- ① 학술,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 목적으로 대학도서관내에서 진행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.
 - ② 지정된 일시를 준수해야 하며, 부득이하게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법학도서관과 협의해야 한다.
4. 전자정보실
- ① 전자정보실내에서 게임 및 채팅, 수강신청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발견 즉시 퇴실조치 한다.
 - ② 이어폰, 랜선 등 기타 이용에 필요한 개인 장비는 본인이 지참한다.

제5조 (이용제한)

- 다음 이용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① 학칙 및 도서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현재 제재중인 이용자.
 - ② 유의사항을 2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동안 이용을 제한한다.
 - ③ 유의사항을 3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2개월 동안 이용을 제한한다.
 - ④ 기타 법학도서관의 이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.

제6조 (기타)

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중앙도서관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